

**청렴의무 위반 사건의 징계기준** (제2조제1호가목 관련)

| 비행의 유형  | 금품 등<br>수수액 | 100만원 미만 |        | 100만원 이상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  |             | 받은 경우    | 제공한 경우 |          |
| 1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|             | 파면-강등    | 파면-해임  | 파면       |
| 2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, 그로 인하여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|             | 해임-정직    | 파면-강등  | 파면-해임    |
| 3. 위법·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 |             | 강등-감봉    | 해임-정직  | 파면-강등    |
| <p>※비고</p> <p>1. "금품 등"이란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이나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익(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. "직무관련자"란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.</p> <p>3. "직무관련공무원"이란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.</p>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